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2024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김병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혁준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3.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2882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3.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실제 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 및 항소심 소송위임장의 기재,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한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실제 의사에 의하여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10. 12. 원고의 넷째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피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및 거기서 준용하는 신탁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다음 괄호 항과 같다.

(1) 위탁자 생전에 위탁자의 부양, 개호, 치료, 요양 등의 들어가는 비용들을 확보하여 행복한 노후설계를 하기 위함

(2) 위탁자 생전에 유언을 대용할 의사표시로서, 위탁자 사후에 유산상속에서 그 재산을 받을

자를 위탁자 생전의 의사표시로 미리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유산상속사무를 도모하기 위함(신탁법 59조 유언대용신탁)

제2조(신탁기간)

이 신탁 계약기간은 이 신탁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수익자)

이 신탁의 수익자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이름: A(원고)

수익권의 내용: 1) 신탁부동산을 무상거주할 수 있는 권리

2)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과금 및 비용을 공

제하고 남은 금원을 수익자의 부양, 개호, 치료, 요양 등에 필요한 돈으로

급부 받을 권리

3) 수탁자로부터 부양의무 이행을 받을 권리

제5조(신탁종료 시에 잔여재산귀속권리자)

이 신탁의 신탁종료 시에 이 신탁계약서 제16조 제①항에 의한 경우 잔여재산귀속권리자 정함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이름: B(피고)

잔여재산귀속시기: 위탁자가 사망하는 때

제6조(수익자의 수익권)

위탁자 겸 수익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권은 소멸하며, 수익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종하고, 신탁종료 후의 잔여재산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종료 시에 잔여재산귀속권리자 지정권 및 변경권)

신탁종료 시에 잔여재산귀속권리자 될 자의 지정권 및 변경권은 위탁자가 보유하며, 위탁자가

생전에 자유롭게 확실한 의사에 기해 행사할 수 있으며, 위탁자 사망 이후에는 상속되지 않고 소멸한다.

제16조(신탁종료사유)

① 다음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을 종료기로 한다.

신탁계약서 제2조 사유(신탁기간 만료)가 된 경우

② 그 외에 신탁종료사유는 신탁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제17조(신탁종료 후 귀속권리자 정함)

① 전조 16조 ①항에 의한 경우 귀속권리자는 수탁자 B(피고)으로 한다.

② 전조 16조 ②항에 의한 경우 귀속권리자 정함은 신탁법 제101조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 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 제4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가 그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에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재된 바와 달리 원고의 막내 딸 N도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0,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2항과 위 조항이 준용하는 신탁법 제99조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항과 위 조항이 준용하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2. 5.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은 원고의 뜻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3.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신탁법 제99조 제2항의 종료사유로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신탁법 제98조 제1호의 종료사유(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강성훈, 판사 권순민, 판사 김봉원

부동산 목록

1. 토지

서울 도봉구 M(C) 대 235.4㎡

2. 건물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3층 다가구주택

1층 131.97㎡

2층 131.97㎡

3층 130.73㎡

지층 124.71㎡

옥탑 16.32㎡, 끝.

